

광주고등법원(전주) 2024. 10. 17 선고 2023나11267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재판경과

광주고등법원(전주) 2024. 10. 17 선고 2023나11267 판결

전주지방법원 2023. 6. 14 선고 2021가합1802 판결

전문

원고, 항소인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기범

피고, 피항소인 유한회사 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파트너 담당변호사 박정교

변론 종결 2024. 8. 22.

판결 선고 2024. 10. 17.

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23. 6. 14. 선고 2021가합1802 판결

주문

-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-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축허가에 관하여 2020. 12.

16. 체결된 건축주 명의변경 약정을 1,000,000,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.

다. 피고는 원고에게 1,00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,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(이 법원에 실질적인 서면이나 새로운 증거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)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.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,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○ 제1심판결 5쪽 4행의 "있고," 부분을 "있고(2023. 5. 3.자 준비서면 2쪽 참조),"로 고친다.

○ 제1심판결 6쪽 1행의 "오히려"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.

『위 녹취록을 보면, ① R(C)이 Q(원고)에게 이 사건 공동주택의 고야층 레미콘 타설 작업을 하고 있음을 알리고(갑 제7호증 4, 41쪽), ② Q이 R에게 '오늘 5천만 원, 수요일까지 5천만 원을 주는 것이냐'고 묻자, R이 그게 아니라고 답변하고(18, 19쪽), ③ R이 Q에게 내일 '그 현장'에 갈지를 묻자 Q은 그 현장에 하루 종일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나 '그 현장'이 이 사건 공동주택 신축 현장인지 여부는 불분명하며(31쪽,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동주택 신축 현장이 아니라 남원 U 현장을 의미한다고 설명한다), ④ R이 Q에게 '단열재 공급업체에 대한 대금지급일을 연기했다'는 취지로 말하고 있는바(53쪽),』

2. 결론

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,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판사박원철

판사김경선

판사기희광

별지